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6
----------	------

제출년월일 : 2012. 3.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인명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및 임시 보호소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 절차(안 제5조)

- 보상금은 충주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인명피해 보상기준(안 제7조)

-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500만원, 사망한 경우 1천만원 보상

다. 농작물 등 피해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안 제10조)

-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같은 경작지에는 연1회로 한정

라. 위원회 설치(안 제12조)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에서 8명 이내로 구성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마.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안 제15조)

바. 임시보호소 운영(안 제16조)

-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보호소 설치
- 임시보호소는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입법예고(2012. 2. 7 ~ 2. 29)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안에서 야생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 때문에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다음부터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야생동물 때문에 사람이나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한다.

제2장 피해신고와 보상절차 등

제4조(피해신고와 조사 등) ① 야생동물 때문에 신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리·통장과 피해자(유족 포함)가 현장에 참석한 상태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충주시장(다음부터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충주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받은 피해보상액 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시장은 다시 심의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⑥ 보상금은 피해신고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 농작물 등은 7월 말까지 지급한다.

제3장 인명피해 보상

제6조(지급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충주시(다음부터 "시"라 한다.)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한다.

제7조(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보상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사망자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하되, 사망 전의 치료비는 제1항을 따른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수렵활동 중에 본 피해. 다만, 제15조에 따른 자율구제 활동 중에 본 피해는 제외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본 피해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본 피해
4. 불법포획 등의 행위로 본 피해
5.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일 때
6.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았을 때

제4장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제9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민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농작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피해금액 산정과 보상금 지급) 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농작물은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을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안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는 연 1회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 ④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과수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만 지급한다.

제11조(보상제외) 피해 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
- 2.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 3. 각종 법령 등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재배
- 4.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 5. 해당연도에 피해보상금에 상응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았을 때
- 6. 피해 보험금 등을 이미 받았을 때
-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5장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수자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련 실·국장파 실·과·소장
 - 2. 그 밖에 야생동물과 농업 등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PS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 주사가 된다.
- ⑦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산출이 어려운 제10조제1항의 피해액
 -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5조(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수렵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임시보호소 운영) ① 시장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보호소(다음부터 "보호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소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한다. 다만, 보호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면 야생동물 관련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호소 위탁 운영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8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농작물 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하며 대장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 (제18조 관련)

연번	피 해 자			피 해 발생일	가 해 동물명	피 해 내용	보상금 신청액	처 리 결 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상금 지급액	보상금 지급일	미보상 (사유)

104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제18조 관련)

연번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자			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										처리결과	
	성명	주소	신고일	피해 농경지	피해 작물	가해 동물명	경작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	보상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비율 (%)	산정보상액 (원)	보상액 (지급일)	미보상 (사유)

50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10.7.23>

1.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